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법정동 코드	
자동차	등록번호					색상	
	(구)등록번호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전화번호	
	사용본거지					법정동 코드	
	용도	비사업용 []관용 []개인용 []법인·단체용					
		운수사업용 []개인택시 []영업용(개인택시 제외)					
비과세 코드		부관				부관 종료일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수수료
	<div>1. 신조차·수입차</div> <div>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나호·다호의 서류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div> <div>나. 자동차제작증(신조차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div> <div>다. 수입신고확인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의 경우만 제출합니다)</div> <div>라.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만 제출합니다)</div> <div>마. 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에 따라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만 제출합니다)</div> <div>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허가·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1부</div> <div>사.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제출합니다)</div> <div>2.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div> <div>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말소사실증명서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div> <div>나.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div> <div>다. 신규검사증명서 1부</div> <div>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허가·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제출합니다)1부</div> <div>마.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제출합니다)</div>	<div>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div> <div>2.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div> <div>3.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를 제외한 서류)</div>	2,000원. 다만,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자기인증이 면제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
- 가.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 나.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등
2.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3.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군·구)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